

## 大量脫北事態와 私法的 對應

申 榮 鎬\*

### 차 례

#### I. 머 리 말

#### II. 脫北에 따른 法的 諸問題

1. 北韓離脫住民의 國內法的 地位와 就籍
2. 大量脫北事態에 따른 私法上的 問題와 그 解決

#### III. 맺 음 말

\*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法學博士

## I. 머리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북한 지역을 이탈하는 사태는, 민족 통일이 본격화되기 직전이라야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최고위 인사의 망명(?) 또는 귀순 사건이 웅변하고 있듯이, 북한의 체제 동요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예상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이탈하는 유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육상이나 해상을 통하여 軍事分界線을 넘어 남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 특히 러시아나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른바 歸順者로서 처리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제3국의 韓國在外公館에 보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서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 위와 같은 보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도 국제법상의 難民의 지위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離脫住民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3국에서의 출입국 문제는 국제법상의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결부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제법상 또는 공법상의 문제는 이 논문에서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제외하고, 경위야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정착하게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여, 사법상의 제문제만을 검토한다.

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민족 분단이 시작된 이래, 이념과 사상을 이유로 하여 또는 정치적 박해나 경제적 수탈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 등을 이유로 북한 지역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하여야 하였던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시기로 구분되며,<sup>1)</sup> 각 시기에 있어서의 법적 대응 현황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해방 이후 北韓政權이 수립되고 人民民主主義革命 내지 社會主義革命

1) 정영화, “북한주민의 대량 이주에 대비한 법정책론”, 『통일연구논총』 4권 2호 (1995), 159면.

을 추구하게 되자 이념과 사상 면에서 입장을 달리하였던 자가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 특히 1946년에 단행된 土地改革의 여파로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남북한간의 왕래가 비교적 용이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을 위한 입법 조치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48년 4월 1일자의 軍政法令 제179호를 들 수 있다. 아직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기 이전으로서 國籍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 법령은 南北朝鮮이 통일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38도선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등에 한하여 호적의 임시 조치를 규정한 바 있다. 즉 본적을 38도선 이북에 두고 동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 사회생활상에 필요한 신분관계의 확인이나 증명 또는 신분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호적이 동 이남 지역에 없을까닭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법령이다. 월남자와 그 가족에게 假戶籍을 就籍할 수 있게 해 준 법령이다.<sup>2)</sup>

둘째, 6·25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남한 지역으로 피난한 경우이다. 이들을 위한 입법 조치로는 1967년 1월 16일자의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있다.

위 軍政法令은 본래 38도선의 확정으로 월남하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후 실제에 있어서는 6·25로 인한 월남자와 그 가족의 假戶籍 就籍에도 활용되었다. 아울러 그에 의한 假戶籍 就籍은 1960년 1월 1일 『戶籍法』 附則 제136조로 이어졌으며, 동조는 1962년 12월 29일 戶籍法 改正으로 삭제되나, 그에 의하여 편제된 假戶籍은 개정 호적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현행 호적으로 된다. 이로 말미암아 호적에 미수복지구(1953년 7월 28일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아직 수복지지 아니한 지역) 거주로 표시되어 있는 자(이를 잔류자라 한다)의 신분 및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법률이다. 이들의 신분 및 재산관계의 정리는 민법상의 失蹤宣告制度를 통하여도 가능하나 절차·비용의 면에서 특례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停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다. 軍事分界線이 확정되고 남북한간의 주민의 왕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이 시기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 및 그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2) 申榮鎬,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家族法上的 問題”, 『社會科學論叢』 제7집(誠信女子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95), 32면.

첫 단계는 냉전 체제가 지속되었던 1980년대 말까지이다. 이 때의 北韓離脫住民은 극소수로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전향한 자이거나 북한군·주민이 軍事分界線을 넘어와 귀순한 자가 있을 뿐이었다. 이들을 위한 입법 조치로서는 1962년 4월 16일 『國家有功者 및 越南歸順者 特別援護法』과 이 법을 전면 개정한 1979년 1월 1일자의 『越南歸順勇士特別補償法』을 들 수 있다. 귀순자를 반공 이데올로기의 기수로 활용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이들을 國家有功者에 준하여 예우를 하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취업, 교육, 의료, 양육 및 양로 보호, 특별 임용, 주택의 제공 등 정신적 보상과 재산상의 보상을 하기 위한 법이었다.<sup>3)</sup>

둘째 단계는 공산권의 붕괴, 중국·구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같은 국제정세의 본질적 전환과 북한의 개방 및 남북교류의 재개 등의 국내적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北韓離脫住民의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이주의 경로도 軍事分界線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할 수 있게 된 시기이다. 외교관, 유학생, 사상원, 당 간부나 관료 및 군인으로서 제3국에 체재하던 중 귀순하거나, 러시아 별목공으로 있던 자나 중국으로 탈출하였던 자들이 外交交渉이나 통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제3국의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거나,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1993년 6월 11일 『越南歸順勇士特別補償法』을 전면 개정한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이 마련된다. 보호의 대상을 북한(軍事分界線 이북 지역)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동포로 확대하는 대신, 종래보다 지원 내용을 축소 조정하고 업무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 법은 다

3) 정영화, 전계논문, 172면. 북한도 이와 유사한 입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1956. 11. 3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政令 『월남한 사람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줄 데 대하여』가 그 것이다. 이 政令 제1항은 “월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에게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월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 남조선의 암담한 생활로부터 벗어나며 자기의 생활 안전과 가족, 친척, 친구들 간의 상봉 또는 취학할 목적으로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들을 다른 모든 공민들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직업의 알선과 취학의 보장 등 온갖 편의를 도모하여 주며 그들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공헌에 대하여는 국가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4) 정영화, 전계논문, 159면 참고.

시 1996년 정기국회에서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로 대체된다. 『歸順北韓同胞保護法』 제2조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北韓에서 大韓民國으로 歸順한 同胞”라고만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그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대체 입법이 행해진 것이다. 즉 軍事分界線을 경유하여 월남한 자와 제3국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는 동법의 보호 대상인 歸順者에 해당하나, 러시아 별목공 및 중국 체류자로서 국내 입국자 또는 북한공민증을 휴대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밀입국한 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sup>5)</sup> 그리하여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은 보호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즉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 말하며,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북한(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 住所·直系家族·職場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호, 제2호). 아울러 업무주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원으로 이관하였다. 北韓離脫住民의 정착 문제를 소수계층의 소외문제의 하나로 보고 단순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통일 정책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취해진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정리한다면, 歸順北韓同胞의 남한에의 정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인 차원이나 새로운 체제에의 동화 내지 순화를 위한 접근이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것도 귀순이 개인 차원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 경위야 어떠한,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이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정한 법적 대응은 아니었다.

이상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의 大量離脫狀況이 발생하고 이들이 남한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사법상의 문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추출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관련 현행 법제가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5) 정영화, 전계논문, 159면 참고.

## II. 脫北에 따른 法的 諸問題

### 1. 北韓離脫住民의 國內法的 地位와 就籍

위에서 언급한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의 보호 대상인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북한에서 곧 바로 남한으로 귀순한 자나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으로 탈출한 다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부터 제3국에 거주하며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이후에 제3국으로 이주하여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다만, 북한에 주소나 직장이 있거나 직계가 족이나 배우자를 두고 있는 자가 제3국으로 탈출하여 무국적자로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으로 된다.<sup>6)</sup>

북한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다 남한으로 이주하게 되는 유형은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 당국의 합법적인 승인을 얻어 출국한 자가 제3국의 大韓民國 在外公館의 협력을 받아 입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으로 탈출하여 체류국 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협력을 얻어 입국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북한 주민은 체류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당해국의 출입국절차를 위반한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국제법상의 難民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가가 보호를 위한 첫 단계에 속한다. 국제법의 일반적 해석론은, 제3국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한 북한 주민도 難民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sup>7)</sup>

그러나 제3국에서의 처리는 일률적이지 못하다. 러시아의 경우는 1995년 8월 1일 『정치망명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실시하여 시베리아의 북한 별목공이 러시아에의 망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어, 중국에

6) 그러나 이들이 滯留國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 대상으로 될 수 없다(『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 제9조제4호).

7) 정영화, 전계 주 1)의 논문, 164~166면 ; 鄭永和, “北韓移住民의 早期定着을 위한 法政策論”, 『公法研究』 제24집 제4호(韓國公法學會, 1996), 465면 참고.

체류하는 북한탈출자는 중국인과 혼인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남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거나, 또는 밀항·밀입국의 방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입국자로서 체류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무국적자라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북한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도 국내법상 大韓民國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일설은 1948년의 國籍法이 북한 주민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할 때, 북한 주민도 大韓民國憲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sup>8)</sup>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정치적 선언규정·명목규정에 불과할 뿐 엄격한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동조의 삭제 내지 수정을 주장하기도 한다.<sup>9)</sup>

북한 주민이 大韓民國의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가는 이 논문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때문에 北韓離脫住民이 남한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들도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北韓離脫住民의 戶籍法上的 就籍이 문제된다.

戶籍法上 就籍이라 함은,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家庭法院의 허가를 얻어 就籍申告를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가지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北韓離脫住民의 就籍에 관한 입법적 규율은 軍政法令 제79호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는 1962년의 戶籍法의 개정에 의하여 종료되기에 이르른다. 그 이후 北韓離脫住民의 就籍問題에 대한 입법적 대처는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 제15조가 귀순자의 就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그 처음이다. 이에 근거하여 1978년 12월 29일 法政 제359호로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施行에 따른 戶籍事務 處理要領』이 제정되어<sup>10)</sup> 실무상의 처리를 뒷받침하게

8) 정영화, 전계 주 1)의 논문, 166~168면; 鄭永和, 전계 주 6)의 논문, 466~468면.

9) 張明奉, “統一政策과 憲法問題”, 『法學論叢』 제3집(國民大學校 法學研究所, 1990), 89~91면.

10) 이 戶籍例規는 歸順者의 就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 제15조에 의한 就籍의 기준은 戶籍法施行令 부칙 제2조

되었다.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이 『歸順北韓同胞保護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就籍에 한 특례는 동법 제11조로 규정되며, 이는 다시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규정된다. 北韓離脫住民도 戶籍法 제116조의 일반적 就籍節次에 따라 就籍하여야 할 것이나,<sup>11)</sup> 그 특례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통일원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就籍許可申請書를 제출하며 서울가정법원의 就籍 허가 여부에 따라 호적을 편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교포의 就籍은 一般無籍者와 같이 戶籍法 제116조에 따라 就籍하여야 한다.<sup>12)</sup> 또한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졌던 호주가 월

의 적용됨이 없이(1945. 8. 15 또는 1950. 6. 25 기준) 단신 귀순자는 단신으로 就籍하도록 할 것이며, 만일 越南歸順勇士의 家族이 越南하여 이남에 就籍이 된 경우에는 그 戶籍에 추가로 就籍許可節次에 의하여 入籍하게 할 것이고, 이 경우는 戶籍法施行令 부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2. 就籍許可申請書의 접수는 戶籍非訟事件에 접수하되 申請人의 표시는 援護處長이 될 것이고, 越南歸順勇士는 事件本人으로 표시하고 備考欄에는 事件處理現況(統計)을 파악하기 위하여 『援護』라 표시한다.
3. 就籍許可申請書를 받은 서울家庭法院은 지체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許可決定의 경우에는 그 決定謄本을 就籍地 管轄 市, 區, 邑, 面의 長에게 송부할 것이며,
4. 不許可決定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別添 附箋紙 등에 명시하여도 무방)하여 援護處長에게 송부할 것이다.
5. 就籍許可決定을 송부받은 管轄 市, 區, 邑, 面의 長은 지체없이 戶籍을 編制하고 5일 이내에 그 戶籍謄本 2통을 작성 援護處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記載例는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에 따른 記載例에 준한다.

가. 戶籍事項欄

하년 하월 하일 서울家庭法院의 就籍許可(하년 하월 하일)에 의하여 편제 印

나. 身分事項欄

하년 하월 하일 서울家庭法院의 허가에 의하여 就籍 印

7. 市, 區, 邑, 面의 戶籍事件 件數表 作成에 있어서는 事件表 其他欄 餘白에 제41란 就籍事件 중 몇 건은 援護라고 說明附記하도록 할 것이다.

11) 無籍者가 戶籍을 가지려면 無籍者 자신이 本籍地로 하려고 하는 곳을 관할하는 家庭法院(地方法院 및 支院 포함)에 就籍許可申請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就籍地의 市(區)·邑·面의 長에게 위 許可書 謄本을 첨부하여 就籍申告를 함으로써 戶籍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姓·本創設許可節次를 먼저 밝아야 할 것이다(1995. 12. 19. 法政 3202~545).

12) 가. 國內 戶籍의 原本과 副本의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一般無籍者와 같이 戶籍法 제116조에 의한 就籍의 절차를 취할 것이고

나. 本籍地가 北緯 38度線 이북의 未收復地區인 경우에는 1945. 8. 15를, 北緯 38

남 또는 일본에 거주하며 무적인 상태로 자식을 낳고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就籍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게 되는 바, 北韓離脫住民이 就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sup>13)</sup> 그 가족의 就籍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상 就籍이라 함은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家庭法院의 허가를 얻어 就籍申告를 하므로써 새로운 戶籍을 가지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남북분단이란 현실과 관련하여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인 未收復地區에 戶籍(本籍)을 가졌던 無籍者는 그 未收復地區가 北緯 38度線 以北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北緯 38度線 以南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원래의 原籍地 戶籍의 記載事項 그대로 就籍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申請人도 戶主 또는 戶主承繼의 先順位者가 未收復地區에 거주하는 戶主 또는 家族(未收復地區 居住라고 표기)까지도 함께 등재하여 1호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未收復地區에 戶籍을 가졌던 戶主가 일본에 건너가 자식을 낳고 就籍하지 아니한 채 無籍者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방 당시(38선 이북인 경우) 未收復地區에 그가 戶主인 戶籍이 있었던 자라면, 家族인 戶主承繼의 先順位者가 있으면 그 자가, 家族이 없다면 새로 태어난 戶主承繼人의 지위에 있는 자가 原戶籍의 내용대로 就籍許可를 받아 사망한 자를 戶主로 하는 新戶籍을 編制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 戶籍에 그 直系卑屬에 대하여 出生申告 또는 就籍節次에 의하여 그를 그 家에 入籍시킨 다음 戶主에 대한 死亡申告와 戶主承繼申告를 하여야 할 것이다.<sup>14)</sup>

반면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크공화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한국인 호주의 자(子)라고 하더라도 就籍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그 호적에 입적할 수는 없고

---

度線 이남의 未收復地區인 경우에는 1950. 6. 25.를 각각 기준으로 戶主 및 全家族에 대한 就籍의 절차를 취할 것이고(戶主가 귀국한 경우에는 戶主가, 家族만이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家族 중 長이 되는 자가 就籍의 절차를 취한다)

다. 1945. 8. 15. 또는 1950. 6. 25. 이후에 출생한 자 및 신분관계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나항에 의한 就籍節次를 취한다(1979. 6. 27. 法政 제163호 中共으로부터 귀국한 교포의 就籍).

13) 北韓離脫住民으로서 保護決定을 받게 되면 統一院長官에 의한 就籍이 강제되나, 就籍節次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14) 1993. 5. 11. 法政 제911호.

먼저 법무부로부터 국적판정절차 또는 국적취득절차를 거쳐 大韓民國의 국적을 가져야만 호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무국적자가 호적을 가지려면 우선 법무부로부터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 就籍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sup>15)</sup>

이 예규에 의한다면,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 제19조는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 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大韓民國의 국적이 부여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離脫住民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北韓離脫住民이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에게 보호를 신청하고(동법 제7조), 통일원장관이 北韓離脫住民對策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동 제8조). 이 일련의 과정이 北韓離脫住民에게 大韓民國의 국적을 부여하는 실질적 절차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법이론적으로는 北韓離脫住民도 大韓民國의 국적을 보유한다는 점이 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北韓離脫住民의 사법상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자의 국적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나, 공법상으로도 한민족으로서의 소속성을 표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법적 의미에 있어서 완전한 외국인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어쨌든 현 한국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유사한 풍습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외래자』로 비취지며, 때로 새로운 부담을 안겨 주는 존재로서 또 難民 유사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 2. 大量脫北事態에 따른 私法上的의 問題와 그 解決

### (1) 法律關係 當事者로서의 地位

北韓離脫住民으로서 就籍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北韓離脫住民도 自然人인 이상 사법상의 權利能力은 당연히 인정된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모든 自然人에게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은 일반적 법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상호주의나 배타주의에 따른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離脫住民은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른 문제는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15) 1994. 12. 27 法政 3202-491 無國籍者가 戶籍을 가지는 節次.

이, 北韓離脫住民으로서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고 就籍을 한 자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실제법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의 지위 즉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도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의 관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구체적인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民事紛爭을 해결하는 南北韓 法院의 각각의 確定判決이나 仲裁判定의 효력을 상호 승인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입법이나 남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離脫住民 중에는 민법상의 失蹤宣告나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不在宣告 또는 失蹤宣告를 통하여 사망으로 의제되고 權利能力이 소멸되었던 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 절차를 밟지 아니하더라도 權利能力을 인정받으므로 남한에서의 私法生活을 영위해 나가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失蹤宣告나 不在宣告에 의하여 해소되었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大量脫北事態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다 용이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財産法上の 問題

北韓離脫住民이 남한에 거주·정착하면서 재산법상의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게 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北韓離脫住民 중 분단 이전에 남한에 거주하였던 자나 그 후손들이 남한 지역에 소재하는 과거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재산권 관련 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원인을 이유로 한 時效의 중단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이외에도 著作權을 비롯한 無體財産權의 보호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sup>16)</sup>

16) 張明奉, “『합의서』에 대비한 법적 정비문제”, 『통일한국』 1992년 2월호(평화문제연구소), p.18.

분단 이전에 발생한 債權債務가 時效로 소멸하였는가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債權債務뿐만 아니라, 北韓離脫住民이 주장할지도 모르는 銀行債權이나 각종 證券的 債權의 행사에 관한 문제이다. 債務者側의 消滅時效의 완성 주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債權者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속하므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北韓離脫住民이 북한 지역에서 맺었던 재산적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北韓離脫住民 상호간에 해결되지 아니한 법적 문제가 남한에서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그 유효성이 긍정된다면, 어느 법률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가 즉 準據法의 결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로 다른 법제가 존재함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고, 민사나 상사와 관련한 準國際私法的 問題가 제기될 것이며, 이 때 그 準據法의 결정 문제가 수반되게 된다.

아울러 北韓離脫住民이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하였던 재산의 보호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北韓法上 個人所有權이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소비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無體財產權의 보호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현행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은 北韓離脫住民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과 각종 자격에 대한 인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13조, 제14조).

### (3) 家族法上的 問題

#### 1) 戶籍上的 就籍에 관한 문제

현행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北韓離脫住民이 就籍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동법에 의한 보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지금과 같이 北韓離脫住民이 소수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脫北事態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北韓離脫住民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과 아울러 就籍에 있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 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登錄臺帳謄本<sup>17)</sup>과 戶

17) 登錄臺帳은 定着支援施設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長이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

籍의 記載方法에 준하여 작성된 身分表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적의 기재 사항에는 본적,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주 및 가족의 성명·본,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과 같은 신분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신분관계사항은 보호대상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부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될 가능성도 많다고 하겠다. 北韓離脫住民이 북한의 공민증을 휴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일차적인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서 혼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혼인한 것으로 기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9)</sup>

한편 본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아니하나, 本에 관하여는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모르나,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本制度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이 자기의 本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나, 本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就籍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새로 창설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姓과 本을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781조제3항).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北韓離脫住民 중 離散家族에 해당하는 자는 就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절차와 다른 절차에 의하여 就籍하게 된다. 가족 중 먼저 남한에 거주하면서 호적을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追完申告』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 2) 家族과 親族關係에 있어서의 諸問題

- 특히 北韓離脫住民과 離散家族과의 再結合을 중심으로 -

北韓離脫住民 중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나 친척과 재결합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짐작된다. 배우자 사이의 재결합, 부모 자녀와의 재결합

---

保護決定을 한 때에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보호대상자의 本籍·家族關係·經歷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 제12조제1항).

18) 戶籍法 제15조 참조.

19) 과거 假戶籍의 就籍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무효인 戶籍事例을 참고하더라도, 大量脫北事態가 발생하고 이들이 이 법에 의한 就籍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0) 戶籍例規 제951항(1956. 11. 5 法行政 제827호) 참조.

기타 근친자간의 재결합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결합이 발생하게 될 경우의 家族法 및 戶籍法上的 諸問題가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처리될 것인가에 따라서는 때로는 재결합이 새로운 비극을 낳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sup>21)</sup>

가. 北韓離脫住民이 北韓家族法에 기초하여 형성한 身分關係의 有效性

南北韓家族法은 몇몇 분야에서는 전통과 습속에 근거하여 공통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성립요건이나 이혼, 친자관계의 발생, 양자제도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적지 아니하다. 예컨대, 한국민법 제809조제1항은 촌수의 원근을 불문하고 동성동본자는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무효혼(제815조제2호)이거나, 취소혼(제816조제1호)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北韓家族法도 전통에 영향을 받아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나, 그 범위는 8촌까지의 혈족 및 4촌까지의 인척으로 규정한다.<sup>22)</sup> 또 이에 위반하면 무효혼으로 된다.<sup>23)</sup>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家族法에 의하면 8촌의 범위를 벗어나는 동성동본자간의 혼인도 유효하다. 따라서 韓國家族法에 의하면 취소혼에 해당되는 北韓離脫住民의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北韓家族法에 근거한 신분관계의 유효성 인정과 더불어, 北韓家族法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의 해소가 문제될 때에도, 韓國家族法의 적용만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고 본다. 준국제사법적 해결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北韓家族法에 근거하여 형성 또는 신분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韓國家族法의 일방적인 적용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랫동안 나름대로 적법성을 유지해 온 기존의 신분관계의 인위적 변경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나. 親族關係의 認定

北韓離脫住民과 남한 거주자 사이에 혈연이나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도 친족으로서의 법률상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법상의 『가족』이나 『친족』의 개념 및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법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21) 申榮鎬, 전제논문, 37면 이하 참고.  
 22) 북한가족법 제10조.  
 23) 동법 제13조제1항.

한국민법상의 『가족』·『친족』에 맞추어 친족법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한국민법만을 적용한다면, 北韓離脫住民 상호간에 있어서도, 종래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을 동안에는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새로이 친족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北韓家族法에 의하여 法定親子로서의 신분관계가 인정되던 繼親子는 1촌의 인척관계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한다.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친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한국민법의 적용을 긍정하더라도, 북한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친족관계에 인위적인 변경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 다. 婚 姻

婚姻과 관련하여서는 重婚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40여년간 지속된 남북한간의 장기적인 단절은 양측 주민들의 婚姻關係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분단과 단절 이전에 婚姻하였던 부부가 남북으로 이산되어 일방 또는 쌍방이 각자의 거주지에서 이미 再婚하거나 또는 타인과 부부의 명의로 동거생활을 하며 事實婚關係를 유지하는 등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北韓離脫住民의 숫자가 증가될 경우에는, 분단과 단절 이전에 성립된 婚姻關係와 그 후 새로 형성된 婚姻關係로 인한 重婚의 처리와 같은 婚姻紛糾의 해결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

역사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重婚問題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婚姻問題에 대하여 현재의 家族關係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과 가족법상의 1부1처제의 적용을 그 처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라. 親 子

婚姻의 경우에서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본다. 失蹤宣告나 不在宣告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취소를 통하여 회복되며, 就籍에 의하여 친자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法定親子關係에서는 약간의 검토를 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繼親子間的 문제도 있으나, 養子制度에 관한 北韓家族法과 韓國家族法 사이의 차이로 말미암아 養親子關係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北韓家族法에 의하여 형성된 養親子關係의 유효성을 긍정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北韓家族法에 의하면 養親子關係가 성립하면 친부모와의 친

자관계는 단절된다.<sup>24)</sup> 반면에 韓國家族法은 養親子關係가 성립하더라도 친부모와의 법률적 연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친과 친부모와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게 된 자는 다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親子意識을 감안하여, 韓國家族法에 따라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도 다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相續

北韓離脫住民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친척과의 재결합은 相續關係의 재처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被相續人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진 후 相續이 개시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相續權의 근거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결합 이전에 相續이 개시되고 相續財產의 분할까지 행해진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다.

일단 相續人으로서의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相續回復이 야기된다.<sup>25)</sup> 물론 민법 제999조제2항은 相續回復請求權의 행사 기간을 相續權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相續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被相續人의 혈족 또는 배우자였던 北韓離脫住民의 相續回復主張은 위 除斥期間의 경과로 인해 인정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도 相續權의 회복이 인정된다면, 분단 이후 처리되었던 모든 相續關係가 전부 반복되어 相續秩序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게 되므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除斥期間에는 時效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산권의 회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相續權을 주장할 수 없었던 北韓離脫住民의 相續權 主張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相續財產이 분할되기 전이라면, 그 분할에 참가할 수 있고, 이미 분할된 경우라면, 제1014조를 유추하여 相續分價額支給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24) 북한가족법 제33조제2항.

25) 殘留者로서 不在宣告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당연히 相續權이 인정되며, 재결합 이전에 相續이 개시된 경우에도, 이들은 相續財產을 취득하며 不在者財產管理制度에 의하여 相續받은 재산이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대법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사건 참고). 失蹤宣告나 不在宣告를 받은 자라면, 그 취소에 의하여 相續權을 회복하게 된다.

것이다. 다만, 相續分價額 全額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물적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제1014조에 의한 相續分價額請求를 할 경우에는, 相續財産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26)</sup> 때문에 相續財産의 분할이 오래 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相續財産의 가격 변동에 의하여 다른 共同相續人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을 통하여 물적 제한을 둘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 Ⅲ. 맺음말

이상의 검토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의 대량 이탈과 그들의 남한에서의 거주·정착에 따른 사법상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당면 과제는 남한에 거주·정착하기까지의 국제법 및 공법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北韓離脫住民이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후자의 과제에 대한 기본법률인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과거 서독이 동독 이주민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선례<sup>27)</sup>를 참고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비한 점에 대한 보완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본다.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법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就籍에 관하여는, 北韓離脫住民이 소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大量脫北事態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기는 하다. 아울러 北韓離脫住民이 離散家族에 해당되어 이미 마련된 절차에 따른 就籍이 가능할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就籍만 허용되는지의 여부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6) 대법 1993. 8. 24 판결 93다12사건.

27) 이에 관하여는 정영화, 전계 주 1)의 논문, 177면 이하; 廣渡清吾, 『統一ドイツ의 法變動 - 統一の一つの決算-』(有信堂, 1996), 183頁 이하 참고.

北韓離脫住民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의 사법상의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그들의 財産權回復을 둘러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신분관계에 관한 문제는 특히 北韓離脫住民이 離散家族으로서 가족 및 친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문제는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기도 하다.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는, 大量脫北事態에 따른 사법상의 제문제를 입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법상의 문제를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 목적이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기본법률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남북한간의 주민 접촉·상대지역의 왕래, 경제협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주민의 접촉·왕래의 활성화가 빚어낼 수밖에 없는 사법상의 문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보완을 통하여 離散家族의 재결합과 관련된 문제나 남북한간의 법의 저촉으로 생겨나게 될 準涉外私法的 問題를 효율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大量脫北事態의 발생을 대비하거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準涉外私法的 立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 태도로는, 남북한의 기존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도주의적 정신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남북한의 기존 법률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